

제7.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

2012년 6월 19일 세계무역기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제65차 회기에 열린 논의에서와 같이, 양 당사국은 제7.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서로의 양해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.

대한민국은 각주 5가 세계무역기구 「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」 제16조제2항가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양해하며, 부속서 7-가-4 상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러한 양해에 기반한다.

영국은 각주 5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설립을 하거나,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주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7.5조제2항가호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제한임을 명확히 한다고 양해한다. 이 각주는 세계무역기구 「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」 제16조제2항가호의 의미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